

의안 번호	1273
----------	------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연월일 : 2016. 10. 4.(화)
-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회부 : 2016. 10. 7.(금)
- 라. 위원회심사 : 2016. 10. 24.(월)

2.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제1항)
 -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 3.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근거법규

-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본 조례 제27조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 사업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